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9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한병도·조 국·이기헌

윤준병 • 위성락 • 위성곤

진선미 • 박정현 • 김한규

정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 도록 하고 있으나,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상의 장애물, 불 법 주·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이를 위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,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 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정임.

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,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4(소방진입환경조사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다.
 -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, 시설개선 등 소방자동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 조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다.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은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, 시설개선 등 소방자동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
<u>다.</u> <u>③ 제1항의 조사 범위 및 방법</u>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